

2019학년도 돌봄교실 오카리나 프로그램 교재선정 심의(안)

안건 번호	3
----------	---

제안년월일 : 2019.03.28
제 안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교사 채욱

1. 제안목적

방과후학교 바이올린, 돌봄교실 오카리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재선정을 심의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오카리나 교재는 오카리나 첫걸음 완성(아름출판사)으로 함 소요예산은 4권 * 8,000원 = 32,000원임

3. 기대 효과

- 가.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질계발
- 나.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수요자 만족 극대화

2019학년도 학교급식관련 심의(안)

안건 번호	5
----------	---

발의연월일 : 2019. 3.28.

제안자 : 학교장

담당자 : 정민영

1. 제안이유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 참여율을 높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생·안전관리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급식소위원회' 운영 법정화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2007.6.7 시행)

3. 주요내용

가. 구성 : 5명

- 1)기준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학생대표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 2) 계획 :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
- 3) 임원 :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소위원회에서 호선
- 4) 임기 : 2019. 4. 1 ~ 2020. 3. 31. (1년, 연임 가능)
- 5) 간사 :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교사)
- 6) 급식소위원회 회원 결원 시 결원인원만 재구성하며, 교직원은 인사이동시 후임으로 자동 연계한다.

나. 임원의 역할

-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통합
- 2) 부위원장 : 위원장 보좌,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대행

다. 소위원회의 역할

-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
- 2) 학교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에서 흡수·운영하되, 참여 가능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
- 3)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

- 4) 급식 예·결산에 관하여 실무검토
- 5)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 6)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7)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활동으로 정한 사항

붙임1.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1부.

붙임2. 2019년 학교급식소위원회 명단 1부.

【붙임1】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국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27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 운영 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급식 관련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5~9명 이내로 구성)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 가. 교직원
 -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다. 학부모
 - 라. 학생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한다.
- 임시회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교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학교급식 소위원회 명단

2019. 4. 1.

순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비고
1	위원장	박0임	학부모		5학년 임00
2	부위원장	여0자	학부모		6학년 윤00
3	학부모 위원	이0주	학부모		1학년 김00
4	교원위원	진0금	교감		교감
5	교원위원	채0윤	교사		연구부장